

서울特別市麻浦區分燒介助費支給條例廢止條例(案)
審査報告書

1992년 9 월 17일
市民保健委員會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2년 9 월 2 일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2년 9 월 9 일

다. 상정일자 : 제11회의회(임시회)

제1차위원회('92.9.17)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가. 제안이유

의료보호법(법 제4353호. 1991.3.8) 제 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만도 의료보호 대상이 됨에 따라,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지급되던 분만개조비 지급대상자가 없어짐에 따라 조례폐지

나. 주요골자

서울특별시마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 (1988.5.1.조례제52호)로 제정된 조례폐지

3.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건재)

1)동조례 폐지조례(안)은 의료보험법 제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3항 및 보사부고시(제88-69호 88.11.10)에 의하여 1989.7.1부터 서울특별시가 지역의료보험지역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도 당연적용 피보험자가 되고,

2)의료보호법(법률 제4353호. 1991.3.8) 제 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만도 의료보호대상이 됨에 따라,

3)서울특별시마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에 의하여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지급되던 분만개조비 지급대상자가 없어짐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동조례 폐지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홍길표의원)

저소득층의 분만개조비는 지역의료보험 조합에서 지급하는가?

○ 답변요지(보건지도과장 유인자)

저소득층의 분만개조비는 의료보호비로

지급됨.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

서울特別市麻浦區分燒介助費支給條例廢止條例(案)

제출년월일 : 1992년 8월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의료보호법 제7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보사부 고시(제88-69호.88.11.10)에 의하여 1989.7.1일부터 서울특별시가 지역의료보험지역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도 당연적용 피보험자가 되고.

○의료보호법(법 제4353호.1991.3.8)제8조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만도 의료보호 대상이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에 의하여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지급되던 분만개조비 지급대상자가 없어짐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

2. 주요골자

○서울특별시마포구 분만개조비지급조례 (1988.5.1.조례 제52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마포구 분만개조비 지급조례폐지

3. 관련법규

○의료보호법 제7조

제7조(당연적용피보험자) ①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당연히 이법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이하"당연적용피보험자"라 한다)가 된다

②주민의 소득수준, 의료시설의 분포상황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의 주민은 당연적용피보험자가 된다.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4조(당연적용피보험자) ③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적용피보험자로 되는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주민으로 한다. (개정 88.7.22)

○보건사회부 고시 제88-69호 지역의료보
험적용지역

의료보험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
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의료보험적용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8년11월10일

보건사회부장관

(가)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전국의 모든 시

(나) 급여개시시기 : 1989년 7월1일부터

○의료보험법 제8조 제1항

제8조(보호의 내용) ①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진찰
2. 처지, 수술 기타의 치료
3.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기타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7. 분만

4. 폐지조례(안) : 별첨

서울特別市麻浦區分娉介助費支給條例廢止條例(案)

서울特別市麻浦區分娉介助費支給條例는 이를
廢止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特別市麻浦區都市計劃委員會條例(案)
審査報告書

1992년 9월17일
都市建設委員會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2년 8월11일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2년 9월 9일

다. 상정일자 : 第11回議會(臨時會)

第1次委員會('92.9.17)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都市整備課長 김인환)

가. 제안이유

舊都市計劃委員會를 設置하고 이의 운
영에 필요한 事項을 규정하며, 舊都市
計劃委員會 설치와 동시에 기존舊都市
整備자문위원회는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기능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위임된 사항과 관계법령
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및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구성 : 委員長, 副委員長을 包含한
17人 以內

3. 專門委員檢討報告의 要指

(專門委員 김현기)

첫째, 제2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중
가장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제1호
의 위임사항 심의는 현재 서울특별시로
부터 소규모 도시계획 사항에 대한 입
안. 결정권등 권한위임이 각 자치구에
구체적으로 확정, 위임되지 않고 있어
조례제정으로 당장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려우리라 사료됨.

둘째, 제3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전체
위원수는 17인으로 하되, 구의회 의원
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위원수
의 2/3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규정된 것으로서, 이경우 당연적인 구청
장, 부구청장을 제외하면 구의원과 관계
공무원은 3명정도가 위촉 또는 임명될
수 있어 구의원중 일부 의원만이 참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며, 이는 관
련 전문인을 가급적 많이 위촉하기 위
한 입법으로 보이며 본 조례개정은 필
요한 조치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요지(전병만위원)

구 의원은 몇명까지 참여할 수 있는가?

○답변요지(도시정비과장 김인환)

3인까지 참여할 수 있음

5. 토론요지

김중열위원 :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